

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의안 번호	6-1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1. 9. 16

발의자 : 박현희의원외 인

☐ 제안이유

- 2011년 7월14일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「지방자치법」에 맞게 개정 하려고 하는 것임.

☐ 주요내용

- 조례안 예고의 방법,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제20조의2)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을 삭제(안79조제1항3호)

☐ 관련 법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제2항

☐ 일부개정 규칙안 : 불임

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“사무과장”을“의회사무과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조례안 예고) ①의장은 발의(접수또는제출)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·주요 내용·전문(신·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)·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(이하 입법예고라 한다.)할수 있다.

②입법예고기간은 5일이상으로 한다.

③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동두천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」 제2조제1항및제2항,제7조,제9조제1항,제10조를 준용한다.이 경우 시장(주관실·과·소장)은 의장으로 본다.

제49조중“사무과장”을“의회사무과장”으로 한다.

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 을 포함한다)를 들을수 있다.

제7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의석배정)의원의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.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<u>사무과장이</u>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	제3조(의석배정)----- ----- ----- <u>의 회 사 무 과 장 이</u> ----- -----
< 신 설 >	<u>제20조의2(조례안예고)①의장은 발의(접수또는 제출)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·주요내용·전문(신·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)·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(이하입법예고라 한다)할수 있다.</u> <u>②입법예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.</u> <u>③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」 제2조제1항및제2항,제7조,제9조제1항,제10조를 준용한다.이 경우 시장(주관실·과·소장)은 의장으로 본다.</u>
제49조(의사일정과개회일시)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<u>사무과장</u> 과 협의하여 정한다.	제49조(의사일정과개회일시)----- ----- <u>의회사무과장</u> 과-----
< 신 설 >	<u>제52조④위원회는 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수 있다.</u>

현행	개정안
제79조(방청의 제한)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1및2(생략) 3. <u>정신에 이상이 있는자</u> 4.(생략)	제79조(방청의 제한)①----- ----- -- 1및2(현행과 같음). 3.삭제 4.(현행과 같음)

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서

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특구 지정 지역경제 활성화

《 발언내용(요약) 》

지역 특화사업을 발굴,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특산품을 만들어 지역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면 함.

답변내용 : 지역경제과



농업분야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방안

- ❁ 동두천시의 농업분야인 콩, 화훼, 된장 등 재배 및 생산규모가 미미하고 재배환경이 취약한 상태이며,
- ❁ 상주 꽃감, 여주 도자기, 가평 잣 등과 같이 우리시 지역의 특성을 알릴만한 특산품이 없는 실정입니다.
- ❁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요건을 보면 콩, 화훼 등 농업분야 특산품은 전국에 이미 명성이 있어야 하고, 우리시 지역의 특산품 생산량이 전국 규모의 30~40%를 차지해야 지정이 가능함으로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.

※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기획단 자문사항임.



관광문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방안

- ❁ 동두천 탑동지역내 아래의 신 성장 관광, 레포츠 사업이 조성 완료 후 관광, 레저특구로 지정검토토록 하겠으며 (왕방산자연휴양림, 동두천시 푸른숲 드라마세트장,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등)
- ❁ 소요산관광지, 축산물브랜드타운, 삼림욕장,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을 하나의 문화,관광특구로 지정 검토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.